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1. 24.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8. 11. 24
- 다. 상 정 일 자 :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98.11.27)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강명종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1년씩 단축하되,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개정전의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 함.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함.
-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함.

-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본 조례는 1998. 9. 19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환연령을 1년씩 단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 연장제도의 폐지와 이미 근무상환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환 연령 연장기간을 1998. 12. 31로 종료하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도록 하며 별정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 휴직을 명하도록 변경하는 조항과,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에 맞도록 개정 조문구성이나 내용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